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8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박 진·정찬민·조수진

정진석 · 김희국 · 조응천

이 영·김예지·태영호

신원식 · 송석준 · 윤창현

양금희 · 성일종 · 유경준

홍준표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확산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, 그 중 하 나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
또한,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환경의 다양화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 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·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원격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전공 심화과정을 개설·운영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5절에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3조의2(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)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 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 영할 수 있다.
- 제54조의2(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)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 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 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,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3조의2(사이버대학의 전공심 화과정) 전문학사학위를 취득
	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
<신 설>	<u>수 있다.</u> 제54조의2(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) ① 제53조의2에 따
	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 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
	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
	·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
	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 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 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 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

 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

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,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